

#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대표발의: 안 미 자 의원)

의 안 번호	25-9
-----------	------

발의년월일 : 2025. 2. .

발 의 자 : 안미자, 강동오, 고병준,  
권영숙, 오욱자, 이한동,  
한선미, 홍지광

## 1. 개정이유

현행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료에 대해 경로 우대 감면을 시행할 경우 전액을 면제하도록 되어 있으나, 예산 등의 이유로 경로 우대 감면은 전체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음. 이에 우리 구 예산 실정에 맞춰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료의 경로 우대 감면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여, 어르신들의 문화생활 여건을 증진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가.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용료 감면을 지원(안 제10조제5항)

나. 「노인복지법」에 의한 경로 우대자 감면 비율을 조정(전액감면→50%)([별표2])

## 3. 관계법령

「노인복지법」 제26조

## 4. 조 례 안 : 붙임

5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

6. 기타사항

가. 관계법령: 붙임

나. 입법예고: 2025.1.23. ~ 1.31.

##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5항 중 “**사용료등을**”을 “**사용료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**”로 한다.

별표2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2]

자치회관 사용료 및 수강료 감면기준(제10조제5항 관련)

감 면 대 상	감면비율
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	전액면제
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	
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또는 그 가족	
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한부모가족	
「노인복지법」에 의한 경로우대자	50%
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」 제16조의2에 따른 자원봉사자증 소지자	20%

※ 수강료의 감면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1인당 1개 프로그램으로 한정하고 감면대상이 중복될 경우 감면 비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하며, 그 밖에 위 감면기준에 규정되지 않은 내용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																				
<p>제10조(사용료 등) ① ~ ④ (생략)</p> <p>⑤ 구청장은 제11조제3항에 따른 이용자가 저소득자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<u>사용료등을</u> 감면할 수 있으며, 그 기준과 감면 비율 등은 별표2와 같다.</p> <p>⑥ ~ ⑧ (생략)</p>	<p>제10조(사용료 등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⑤ ----- ----- ----- <u>사용료</u> <u>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</u> ----- -----.</p> <p>⑥ ~ ⑧ (현행과 같음)</p>																						
<p>[별표 2] 자치회관 사용료 및 수강료 감면기준(제10조제5항 관련)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margin-top: 10px;"> <thead> <tr> <th style="width: 70%;">감 면 대 상</th> <th style="width: 30%;">감면비율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</td> <td rowspan="4" style="text-align: center; vertical-align: middle;">전액면제</td> </tr> <tr> <td>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</td> </tr> <tr> <td>「노인복지법」에 의한 경로우대자</td> </tr> <tr> <td>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또는 그 가족</td> </tr> <tr> <td>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한부모가족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」 제16조의2에 따른 자원봉사자증 소지자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20%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※ 그 밖에 위 감면기준에 규정되지 않은 내용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.</p>	감 면 대 상	감면비율	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	전액면제	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	「노인복지법」에 의한 경로우대자	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또는 그 가족	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한부모가족		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」 제16조의2에 따른 자원봉사자증 소지자	20%	<p>[별표2] 자치회관 사용료 및 수강료 감면기준(제10조제5항 관련)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margin-top: 10px;"> <thead> <tr> <th style="width: 70%;">감 면 대 상</th> <th style="width: 30%;">감면비율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</td> <td rowspan="4" style="text-align: center; vertical-align: middle;">전액면제</td> </tr> <tr> <td>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</td> </tr> <tr> <td>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또는 그 가족</td> </tr> <tr> <td>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한부모가족</td> </tr> <tr> <td>「노인복지법」에 의한 경로우대자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50%</td> </tr> <tr> <td>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」 제16조의2에 따른 자원봉사자증 소지자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20%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※ 수강료의 감면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1인당 1개 프로그램으로 한정하고 감면대상이 중복될 경우 감면비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하며, 그 밖에 위 감면기준에 규정되지 않은 내용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.</p>	감 면 대 상	감면비율	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	전액면제	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	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또는 그 가족	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한부모가족	「노인복지법」에 의한 경로우대자	50%	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」 제16조의2에 따른 자원봉사자증 소지자	20%
감 면 대 상	감면비율																						
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	전액면제																						
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																							
「노인복지법」에 의한 경로우대자																							
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또는 그 가족																							
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한부모가족																							
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」 제16조의2에 따른 자원봉사자증 소지자	20%																						
감 면 대 상	감면비율																						
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	전액면제																						
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																							
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또는 그 가족																							
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한부모가족																							
「노인복지법」에 의한 경로우대자	50%																						
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」 제16조의2에 따른 자원봉사자증 소지자	20%																						

# 【관 계 법 령】

## 노인복지법

[시행 2024. 11. 1.] [법률 제19814호, 2023. 10. 31., 타법개정]

**제26조(경로우대)**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송시설 및 고궁·능원·박물관·공원 등의 공공시설을 무료로 또는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.

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된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주도록 권유할 수 있다.

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에게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주는 자에 대하여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#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비용추계서

## I. 비용추계 요약

-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: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 10조(사용료 등)
  - 구청장은 제11조제3항에 따른 이용자가 저소득자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으며, 그 기준과 감면 비율 등은 별표2와 같다.
- 비용추계의 전제: 65세 이상 경로우대자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 시 50% 수강료 지원(구민 1인 1강좌)

### 3. 비용추계의 결과 (단위 : 천원)

연도		1차년도	2차년도	3차년도	4차년도	5차년도	합계
구분	○						
	○						
	소계(a)						
세입	○자치회관프로그램 강사료 지원 (65세 이상 감면분)	178,464	178,464	178,464	178,464	178,464	892,320
	소계(b)	178,464	178,464	178,464	178,464	178,464	<b>892,320</b>
□ 총 비용(a-b)		178,464	178,464	178,464	178,464	178,464	<b>892,320</b>

### 4. 재원조달 방안 (단위 : 천원)

연도		1차년도	2차년도	3차년도	4차년도	5차년도	합계
구분	소계						
	의존						
	재원						
자체	소계						
	수입						
	지방채						
민간자본	지방채						
	구비	178,464	178,464	178,464	178,464	178,464	<b>892,320</b>
	합계	178,464	178,464	178,464	178,464	178,464	<b>892,320</b>

5. 덧붙이는 의견: 2024년 65세 이상 수강인원 평균(1,708명)으로 산출되어 수강료 감면 시 수강자 증가 예상

### 6. 작성자

작성자 이름	행정지원국 자치행정과 최미진
연락처	02-3153-8315